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 개관: 우리나라와 비교

신청기관 ▶ (주)삼성산업

I. 서론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19세기 후반 제정러시아의 속국에서, 1924년 10월 구소련의 일원으로서 우즈베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수립,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1991년 9월 완전 독립하였다. 정식명칭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으로, 125개의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국가이다. 한국은 1991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을 국가로 승인한 후, 1992년 1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93년 12월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였다. 1993년 6월과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의 교차방문을 통하여 양국 간 경제교류와 기술협력이 증진되고 있으며, 1999년 대통령 카리모프가, 2005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방문하였고, 양국은 1992년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정, 무역협정, 사증발급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1994년 문화협정, 항공협정, 1998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99년 세관분야공조협정, 2003년 범죄인도조약, 형사사범공조조약, 2005년 사회보장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국가적, 문화적 교류로 인하여 현재는 한국의 민간기업 등이 진출해 있고, 양국 합작 가전제품 및 자동차공장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양국간의 무역은 독립 후 급속히 신장하여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다.¹⁾ 또한 대법원은 두 나라간 사법정보화를 적극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

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은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sh Mustafaev)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재판절차 개선 등 양국의 사법개혁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무스타파예프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의 ‘민사사법개혁: 효과적인 법원운영(Civil Justice Reform: Effective Court Management)’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사법정보화를 포함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전했고, 양 대법원장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²⁾

1937년 스탈린 통치하에 극동 연해주에서 강제이주한 고려인은 현재 20만 명이상이며, 타슈켄트와 그 주위지역에 5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 사르다르야주와 카라칼팍자치공화국 내에도 다수 거주하며 중서부지방에서는 도시지역에 집중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고려인은 다른 민족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으며 국가 경제발전, 특히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6년 이후 유무상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약 130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개선 및 투자의 확대에 의한 거주인구의 증가와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즈베키스탄의 사법제도를 알아야 하는 부분도 증가하고 있다. 상속법의 경우에도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의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하여도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은 점점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상속법 전반에 대하여 소개하는 부분은 여러 관점과 논점 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것을 모두 비교 분석하는 부분은 지면상으로도 내용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민법에 나와 있는 상속법에 대한 부분을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면서, 그 연구의 범위를 상속순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 특징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³⁾

- 1) 두산백과, “우즈베키스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0598&cid=40942&categoryId=34057> (검색일 2016.4.13.).
- 2) 법률신문, “우즈벡 사법정보화 적극 지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390> (검색일 2016.4.13.).
- 3) 우즈베키스탄 민법 부분에서 제5장의 상속법 부분을 참고, <http://world.moleg.go.kr/World/CentralAsia/UZ/priority/28124/original> (검색일 2016.3.21.).

II.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 체계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은 제1장에서 상속에 관한 통칙 부분, 제2장 유언상속, 제3장 법정상속, 그리고 제4장인 상속재산의 취득으로 총 4장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제1112조부터 제1119조까지, 제2장은 제1120조부터 제1133조까지, 제3장은 제1134조부터 제1144조까지, 마지막으로 제4장은 제1145조부터 제1157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법은 민법 제5편에 개재되어 있으며, 상속법상 재산상속을 의미하고, 제1장 상속(제997조~제1059조), 제2장 유언(제1060조~제1111조), 제3장 유류분(제1112조~제1118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 1. 14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기간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기간,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인 2005. 3. 31에도 상속결격사유(제1004조), 한정승인의 방식(제1030조), 배당변제(제1034조) 등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이란 어떠한 때에 이루어지며,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상속이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고인이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규율하는 법을 상속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상속이라 함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된 것이고, 법인에게서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여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 부분을 살펴보면 제118조 제2항에서 “상속개시의 때에 설립되어져 있는 법인, 국가 및 시민자치기관도 유언의 상속인으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법인이 상속의 대상이 아닌 유증의 대상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상속인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국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속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이라는 형태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최종의사에 따라 일어나는 유언상속이 있다. 이들 상속 중에서 유언상속이 우선하고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을 경우에만 2차적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유언상속 우선의 원칙). 따라서 상속이라는 말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법정상속만을 가리

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법정상속은 현 민법상 재산권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상속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⁴⁾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에서도 제1112조의 상속의 근거에서 “상속은 유언 및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거나, 상속재산의 일부승계가 결정되어지기만 한 경우, 또는 본법에서 정하여진 다른 경우에 대하여 행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정상속의 경우 유언이 없거나, 어떠한 조건에 이르렀을 때에 행하여진다는 유언상속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같다.

Ⅲ. 상속

1. 상속의 개시

상속의 개시는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사후개시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법률로 정하여진 상속개시원인이 발생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의 개시원인으로는 자연적인 사망, 법에 의한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에서도 제1116조의 규정에서 살펴보면, 상속의 개시는 제1항에서 “상속은 시민의 사망, 또는 재판소에 의한 사망선고에 의해서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의 개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적인 사망과, 재판소에 의한 즉 법에 의한 사망으로 사망의 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4)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제8판), pnc미디어, 2016, 1885면.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 제1116조의 규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상속에서 사망에 의하여 상속은 당연히 개시되어진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상속개시의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필요에 의해서, 사망 시)로 하고, 사망선고에 의한 경우, 시민의 사망선고에 관하여 재판소의 결정에서 따로 날이 정해진 것이 없는 한,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 한다.” 즉, 사망의 결정이 이루어진 때를 자연적인 또는 법적인 사망의 때로 규정하고, 그때를 기점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정해진 상속개시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만 개시된다는 부분과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상속의 개시원인으로는 자연적인 사망, 법에 의한 사망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 사망에 의하여 상속은 당연히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실종신고의 기간만료에 의한 사망(민법 제28조), 인정사망에 의한 사망(가족관계법등록법 제87조), 그리고 동시사망에 의한 추정(민법 제30조) 등으로 사망을 추정하고 있다. 실종에 의한 사망과 인정사망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실종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개시가 되고, 화재나 수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비록 시체가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서나 검안서등을 작성하기 힘든 경우,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거하여 이를 사망으로 기재하는 것을 인정사망이라 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지닌다. 실종신고에 의한 사망이나 인정사망 모두 상속의 개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동시사망의 경우로, 이는 비행기의 사고나 화재 등 동일한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이를 동시사망으로 규정(민법 제30조)하고 있다.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대신에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즈베키스탄 상속법 제1116조 제3항을 살펴보면, 동시사망에 대해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인의 추정상속인이 1주야(24시간)사이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상속은 이러한 자의 사망 후에 개시하고, 그 각 상속인이 상속한다.”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의 장소

상속의 장소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개시 장소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98조). 만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법 제19조, 제20조), 만일 둘 다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지를 주소로 봐야 한다.⁵⁾ 이에 반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상속법 제1117조에서 “상속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최후의 주소지로 한다. 피상속인의 최후의 주소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부동산, 또는 그 기본적 부분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이 없는 때에는 동산의 기본적 부분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지를 둘 다 알 수 없을 때에는 사망지를 주소로 본다는 국내의 다수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사망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망지가 아닌, 그 상속개시장소를 상속개시가 이루어지는 목적물인 부동산, 동산 등이 있는 소재지를 상속개시장소로 지정하여 상속개시한다는 의미로 보여 진다.

IV. 상속순위에 대한 문제

1. 우리 민법상의 상속인과 상속순위

우선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 대하여는 유언에 의한 지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와

5)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5, 1878면.

순위가 정하여져 있는 법정상속인만이 인정되어지게 되고, 민법에 규정된 일정범위의 친족이외에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 다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일정한 자에게 유증할 수 있으므로, 유언에 의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어 실질적으로 상속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⁶⁾

또한 상속인의 범위를 살펴보면 상속인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 제1000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상속의 순위를 지정하고 이를 상속인으로 한다고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후순위의 상속권자는 전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하게 된다. 또한 제2항에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동일 상속순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된다. 그리고 제3항에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할 수 있고,⁷⁾ 만일 분여되지 않은 때에는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⁸⁾

2.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가지로 나누어지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순위가 된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순위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6)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7) 민법 제1057조의2,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8) 민법 제1058조,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1)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상속인 중에 제1순위자이며,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은 물론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계비속인 한 성별, 혼인, 국적의 동일성여부, 부계, 모계에 관계없이 제1순위 상속인에 속한다. 그리고 법정혈족인 양자도 자연혈족인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며,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사이에 상속순위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따라서 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대하여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한편 종래 법정혈족관계가 인정되던 적모, 서자 및 계모자 사이는 1990년 민법개정으로 인척관계가 인정될 뿐이므로, 적모서자 및 계모자 관계에는 서로 상속권한이 없다. 그 밖에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후에 생가에 상속개시원인이 발생한 경우, 생가 친족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⁹⁾

직계비속안에서의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최근친, 즉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촌수가 동일한 비속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으로 한다고 민법 제10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그 자녀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게 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1순위 상속인 중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그 다음 근친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녀 등이 고유의 상속권으로 상속하게 된다.¹⁰⁾

9)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대판 1995. 9. 26. 95다27769 판결.

(2) 제2순위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즉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 전원 상속결격 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인 한 부계, 모계, 양자, 생가, 남녀를 묻지 않는다. 한편, 이혼한 배우자는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지만, 직계존속으로서 자녀의 재산은 상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적모서자 및 계모자 관계는 혈족사이가 아니므로, 상호간 상속권이 없다.

제2순위 상속자도 제1순위 상속자와 같이 촌수가 다른 존속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최근친이 상속하는 것으로 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으로 한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혼인 외의 출생자가 그 생부 사망 후 인지판결로 친생자로 인지된 경우, 피상속인의 지위를 상속하였던 생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들은 인지판결로 이미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된다. 생부의 직계존속이 인지판결 이전에 가해자들과 손해배상을 합의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피인지자는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¹¹⁾

(3) 제3순위의 상속인

제3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순위, 2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결격이 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도 자연혈족, 법정혈족, 부계, 모계, 남녀, 혼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서로 같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부 또는 모가 다른 형제자매도 포함한다.¹²⁾

형제자매가 수인인 때에는 모두 촌수가 동일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민법 제1001조).

11) 대판 1993. 3.12. 92다48512 판결.

12) 대판 2007. 11. 29. 2007도7062 판결.

(4) 제4순위의 상속인

제4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말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4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1순위, 2순위, 3순위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결격이 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방계혈족도 부계, 모계, 남녀, 혼인여부를 묻지 않는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에서 촌수가 다른 사람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한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인 배우자는 부 또는 처로서 상속권을 가지지 않지만, 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을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1057조의2).

혼인 중의 부부인 이상 별거 중인 사람, 사실상 이혼을 하거나 사실상 재혼 하고 있는 사람, 중혼중인 사람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 또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수계가 허용되지 않으며,¹³⁾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생존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진다. 또한 배우자로서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그 상속은 유효하다.¹⁴⁾ 그

13) 대판 1994. 10. 28. 94므246, 253.

14)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러나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은 당연무효이므로,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 생존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효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로 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무효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속권을 가진다고 한다.

(6) 국가귀속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267조).

3. 우즈베키스탄 상속법상의 상속순위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에서는 제3장 법정상속 부분에서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정상속인은 제1135조로부터 제1141조까지의 조문에 의하여 규정된 순위에 따라서 상속하게 된다(우즈베키스탄 상속법 제1134조 통칙부분 제1항).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선 제1순위의 상속자로부터 제5순위상속자까지 규정하고, 대습상속을 규정하는 제1140조가 있다. 또한 제1141조에서는 피상속인의 노동능력이 결여된 피부양자의 상속순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상속 순위자부터 차례로 우선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제1상속순위의 법정상속인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우즈베키스탄 상속법 제1135조)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양자도 물론 포함된다. 또한 배우자도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실부모(양부모 포함)도 배우자와 같이 제1순위 법정상속

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망 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사항도 법에서 제1순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자(양자포함), 배우자 및 실무모(양부모포함)은 제1순위로서 평등한 지분을 가진 법정상속권을 취득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제1순위의 상속인에 포함되어지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민법에서는 제1순위자를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직계비속에는 태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계의 통설에서는 태아의 상속순위에 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제1000조 3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대습상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상속지위에 대하여도 대습상속으로 인한 제1순위의 상속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상속법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아닌 제1순위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부모는 우리 민법에서 제2순위자인 직계존속으로 규정되어, 그 제2순위자에 해당하는 것에 비하여, 부모도 제1순위자에 대한 지위를 취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제2순위의 법정상속인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2순위의 법정상속인은 직계존속이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상속법상의 제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을 언급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민법상의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제2순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문 제1136조에서는 “피상속인의 부모쌍방이 같은 형제자매, 부모의 한쪽만 동일한 지위의 형제자매, 부계 또는 모계의 조부모는 제2순위로서 평등의 지분을 가지고 법정상속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문에서 제2순위자로서 규정되고 있는 것은 형제자매와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다. 제2순위자로서 직계존속을 규정하여 부모가 제2순위자에 들어가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에서는 부모는 제1순위자로 규정하고, 조부모와 형제자매가 제2순위자로 규정되어 있다.

(3) 제3순위의 법정상속인

제3순위의 법정상속인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에서는 친인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민법의 제4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문을 직역하면 제1137조에서 “피상속인의 아저씨 및 아주머니는 제3순위로서 평등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법정상속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4순위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방계혈족을 규정한다고 생각된다.

(4) 제4순위의 법정상속인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 규정에서는 제 4순위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6촌 이내의 기타혈족은 제4순위로서 법정상속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혈통이 보다 가까운 혈족이 우선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상속하는 제4순위의 상속인은 평등의 지분을 가지고 상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3순위의 법정상속인을 우리나라와 같은 4촌의 방계혈족으로 가정한다면, 5촌과 6촌의 혈족을 의미하고, 우선순위는 보다 최근친의 혈족이 상속권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제5순위의 법정상속인

제5순위의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노동능력이 결여된 피부양자로서 제1141조에 기해서 상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순위로 법정상속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141조의 규정을 살펴보고자한다.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의 노동능력이 결여된 피부양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이상에 걸쳐 그 자에게 부양되어지고, 또는 그자와 동거하고 있던 노동불능자는 법정상속인에 속한다. 법정상속인이 더 있는 경우에 노동불능자는 상속하는 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한다. 제1136조에서 제1138조까지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에 속하면서도 상속하는 순위의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은 노동불능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었는가 아닌가하고는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이상에 걸쳐서 그 피상속인에게 부양되어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한다. 상속하는 자는 법정상속인이 더 있는 경우, 합쳐서 상속재산의 4분의1을 넘지 않는 부분을 상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배우자의 권리

배우자의 권리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 상속법 제1143조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유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배우자에 속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의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 혼인하고 있던 것에 따른 배우자의 그 외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본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 등이 있을 것이고,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의 개시가 이루어 질 때, 배우자의 재산이나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의 지위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에서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 재산의 범위 등을 상속대상에서 제하여, 본인의 재산을 보존하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혼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재산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둘째, 피상속인과 의 혼인이 상속의 개시 전에 사실상 소멸하고, 또한 부부가 상속개시 전 5년 이상에 걸쳐 별거하고 있던 것이 입증된 경우에 배우자는 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정상속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단 제1142조의 유류분권에 대한 규정에 기해서 이루어진 상속에 대해서는 그에 한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법정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되어진 바와 같이, 사실상의 별거중이거나, 사실상의 재혼, 중혼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어, 5년 이상의 별거하고 있는 경우엔, 법에서 사실상의 이혼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여주고, 따라서 이혼한 배

우자로서 상속권한이 없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민법과는 많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V. 대습상속

1. 한국의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사망자나 결격자에 갈음하여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 또는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직접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것이다. 본래의 상속인이 이미 사망, 결격 등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이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그를 대위하거나 승계할 수는 없게 된다. 즉, 대습상속권은 법률규정에 의해서 대습상속인에게 부여되어지는 고유의 상속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¹⁵⁾

여기서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었어야 한다. 즉,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상실하여야 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그 원인이 되지 않는다. 민법에서 상속포기를 대습상속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습상속을 대습상속인의 고유권이라고 본다면,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으로 인정하여야 하나, 민법 제104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습상속이 부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1순위의 상

15) 양형우, 전게서, p1894.

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3순위의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결격 되었을 때 인정되어지므로, 직계존속이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인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여야 할 것이다.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하게 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면 충분하고, 대습원인 발생 당시에 존재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즉, 상속결격사유 발생 후 출생 하거나 입양된 비속의 출생시점이 결격의 전후이냐에 따라 그 출생자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결격 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양자도 대습상속할 수 있다고 본다. 태아에 대해서도 비록 상속당시에는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아의 상속순위에 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00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즉, 대습자가 결격자인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이 없다. 대습상속인도 본위상속의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을 직접 상속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대습상속은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민법 제1010조). 따라서 자녀는 부 또는 모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되며, 배우자는 피대습자인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된다. 이때에 자녀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각각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받는다. 또한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다시 각각 자기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상속한다.

2. 우즈베키스탄의 대습상속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에서도 대습상속에 대하여 제114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대습상속이란 법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이 그 귀속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분은 추정법정상속인과

동순위에 있는 귀속 간에 균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법 제 1140조 제1항). 즉,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대습상속을 그 지분을 이어받아 법정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로서 상속권을 가진다는 의미로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한국의 대습상속에서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에서는 직계비속의 경우와 방계혈족의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경우에는 대습의 권리는 혈족의 부모 등에 상관없이 인정하고, 방계혈족이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조카(조카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피상속인의 사촌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아저씨 또는 아주머니를 대용하는 권리를 취득한다(상속법 제1140조 제2항)고 상세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이나 결격의 사유 등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같음하여 대습하게 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한국과 같다. 하지만 배우자를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습상속에서 배우자의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방계혈족의 경우를 상세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보여 진다.

VI. 결론

상속법이라는 부분은 한 국가의 민족적인 측면이 강한 법체계라 할 수 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적인 부분에 의하여 정착되어지고, 그 나라사람들의 관습 등이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은 법체계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법과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을 비교분석하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의 문화적, 관습적인 차이에 의하여 그 의식이 다르고, 따라서 상속법상에도 많은 부분이 서로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상속법 전반에는 많은 논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순위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는 우선 혈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사회적인 문제점 등이 나타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상속법에서는 상속순위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장 가까운 가족, 나, 배우자, 자식, 부모를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을 중심으로 제1순위의 상속권자가 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는 식의 규정으로 이해한다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들의 사망으로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재산은 자식에게 상속된다. 하지만 만일 자식이 어린 경우, 아이의 부모인 배우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이때 단순히 배우자의 흠결로는 아이의 친권자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의 관리는 여전히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가 아닌 배우자가 하게 되며, 이때 배우자의 자질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우자는 물론 피상속인의 부모까지 제1순위로 지정되어 있고, 균등 상속하게 되어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별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의 판단으로 이혼으로 보아 상속권을 주지 않게 되는 규정 등을 두어, 비록 배우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의 정도는 적다 하겠다. 하지만 어느 제도가 더 좋은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나, 한국의 규정에 비하여 보다 명확하게 입법되어져 있다고 보여 진다.

전 원 도

(건국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참고문헌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제8판), pnc미디어, 2016.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5.

우즈베키스탄 민법 제5편 상속법, <http://world.moleg.go.kr/World/CentralAsia/UZ/priority/28124/original> (검색일 2016.3.21).

법률신문, “우즈벡 사법정보화 적극 지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390> (검색일 2016.4.13).